

1. 개정 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5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 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절차 마련

2. 주요내용

-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신청 절차 및 신청·지정 양식 등 신설(안 제7조의5 및 별지 제5호의9서식·제5호의10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 및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담기관 업무 수행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1항 및 영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10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별지 제5호의9서식 및 제5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인력기준에 적합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 나. 전담조직 현황 2. 전담기관 업무 수행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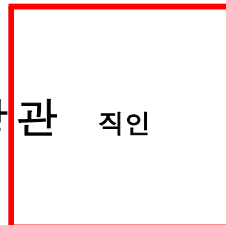
전담기관 지정서

1.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의 성명:
3. 주소(소재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u> <u>법 제10조의5제1항 및 영 제20조</u> <u>의4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투자</u> <u>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u> <u>“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u> <u>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9서식의</u> <u>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u> <u>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u> <u>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u> <u>「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u> <u>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u> <u>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u> <u>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u> <u>(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u> <u>등록증명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u> <u>자격증(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u> <u>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u> <u>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u> <u>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u> <u>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u> <u>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u> <u>한다.</u> <u>1.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u> <u>증명하는 서류</u>

2. 전담기관 업무 수행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1항
및 영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
호의10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